

#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#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0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0. 10. 8.  
제안자 : 이상철 의원  
(찬성자 8인)

## 제안이유

- 가. 2007년 1월 박물관 자료구입 시 유물의 매도희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서 첨부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유물매도자로부터 불필요한 오해가 유발되고, 외부 감정위원의 섭외가 어려워지는 등 유물구입이 곤란해짐에 따라
- 나.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유물구입 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심의회 기능 중에서 전시·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감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,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을 신설함.(안 제18조)
- 나. 유물의 매도희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.(안 제21조)

##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.

##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”를 “심의회”로 한다.

제18조제1호 중 “고증 및 감정에 관한 사항”을 “고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하며,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2.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

제21조제1항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.

- ② 유물은 박물관에서 평가대상 유물을 선정할 후 심의회 위원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심의회 구성) ① 제12조제6항에 의한 <u>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</u>는 분야별로 3인 이상으로 하되, 5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17조(심의회 구성) ① -----            -- <u>심의회</u>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8조(심의회 기능) (생략)</p> <p>1. 전시·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<u>고증 및 감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2. 국내·외 경매 응찰 유물 선정에 관한 사항</p> <p>3.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18조(심의회 기능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고증</p> <p>2. <u>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</u></p> <p>3. -----            -----</p> <p>4. -----            ---</p>
<p>제21조(자료구입) ① 시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유물은 심의회 위원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 매도 희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진·위 여부 및 시가감정서를 발행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21조(자료구입) ①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 <u>범위에서</u>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</p> <p>② <u>유물은 박물관에서 평가대상 유물을 선정 후 심의회 위원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경매유물(해외경매를 포함한다)은 심의회의 실물평가 결과에 따라 관장이 응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③ ----- ----- ----- &lt;삭제&gt;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련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<input type="checkbox"/>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- 제12조(설립과 운영) 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자치법 - 제22조(조례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# 관계법령 발췌사항

## 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】

- 제12조(설립과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·관리·보존·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【지방자치법】

-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